

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2,719,460	18,681,584
일반회계		612,124,124	18,363,724
특별회계		10,595,336	317,860
기타특별회계		10,595,336	317,86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1,390,077	41,702
	건축진흥특별회계	140,000	4,20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834,609	25,038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71,753	38,153
	드림빌특별회계	1,724,890	51,747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49,559	7,487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01,992	3,06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54,766	10,64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27,690	135,83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34,19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간주예산)